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2
----------	-----

제출년월일 : 1993. 8.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1. 제 안 이 유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원도
기계수리소설치운영조례가 제44회 임시회에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도
와 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중전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수리비를 전액 징수하였던것을 기종별
1대당 부품대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 이
상일 경우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징수토록 개정(제6조)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제 5 조(부품대금)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 <u>(단서신설)</u>	제 5 조(부품대금) ----- ----- <u>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u>